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21. 1. 4. 개정 판 (시행 2021. 2. 1.) → 2021. 3. 29. 개정 판 (시행 2021. 3. 1.)

바뀜 4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75/compare?from=1206&to=1207>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전 6:37:57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u>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임 기간 중에</u> 교육 및 학술 업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 <u>에 의해</u>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0-07-20) 2.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타 대학 제외)에 소속된 자로서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할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초빙교수: 연구력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임용되어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초빙석좌교수)을 말한다. 외부 인사들 중에서 초빙한 석좌교수 및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한 석좌교수(교내석좌교수)를 둘 수 있다. 5. 연구교수: 우리 대학교 대학,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6. 기금교수: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7. 특임교수: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학술문화계, 각종 전문직, 공공기관, 기업체의 임원 등 탁월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u>기타의</u>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u>많아</u>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개정 2020-07-20) 2.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타 대학 제외)에 소속된 자로서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할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초빙교수: 연구력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임용되어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초빙석좌교수)을 말한다. 외부 인사들 중에서 초빙한 석좌교수 및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한 석좌교수(교내석좌교수)를 둘 수 있다. 5. 연구교수: 우리 대학교 대학,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6. 기금교수: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7. 특임교수: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학술문화계, 각종 전문직, 공공기관, 기업체의 임원 등 탁월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제6조(구비서류) 명예교수 추천 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교육 및 학문사항의 공적에 관한 개요서 2. 대학(원)장 추천의견서	제6조(구비서류) 명예교수 신청 시 명예교수임용지원서[별표서식]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9)
제7조(처우) ①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연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교수는 대학의 제반 의식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의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③	제7조(처우) ①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연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② 명예교수가 도서관 등 교내시설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현행	개정안
명예교수의 직계자녀에 대하여 학비를 감면한다. ④ 명예교수가 도서관 등 교내시설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대우를 한다. <개정 2021-03-29>
제10조(임기)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연임할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신임기의 종신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단, 명예교수 임기가 종료된 후, 재임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교수 재임용 신청서(별표서식2)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기)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신임기의 종신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단, 명예교수 임기가 종료된 후, 재임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교수 재임용 신청서[별표서식_2]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9>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
2.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타 대학 제외)에 소속된 자로서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초빙교수: 연구력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임용되어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초빙석좌교수)을 말한다. 외부 인사들 중에서 초빙한 석좌교수 및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한 석좌교수(교내석좌교수)를 둘 수 있다.
5. 연구교수: 우리 대학교 대학,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6. 기금교수: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7. 특임교수: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학술문화계, 각종 전문직, 공공기관, 기업체의 임원 등 탁월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비서류) 명예교수 신청 시 명예교수임용지원서[별표서식]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처우) ①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연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③ ④ 명예교수가 도서관 등 교내시설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임기)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신임기의 종신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단, 명예교수 임기가 종료된 후, 재임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교수 재임용 신청

서[별표서식 2]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